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4
----------	------

제출연월일: 2025. 10.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설비요건 중 면적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작은도서관,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안 제2조)
- 나. 작은도서관 설비요건(건물면적 33m² 이상) 예외규정 삭제(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가.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 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34851(2025.8.26.)호]

라. 입법예고: 2025. 8. 18. ~ 9. 8. <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비하여야”를 “구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비하여야”를 “구비해야”로 한다.

2.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정하여야”를 “시정해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출하여야”를 “대출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작은도서관</u>“(이하 “<u>도서관</u>”이라 한다)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도서관도 <u>작은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u></p> <p>2. “<u>도서관 자료</u>”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u>공중에 제공</u>하는 자료로서 <u>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u></p> <p>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u>작은도서관</u>“(이하 “<u>도서관</u>”이라 한다)이란 「<u>도서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u>도서관을 말한다.</u></p> <p>2. “<u>도서관 자료</u>”란 <u>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u>구비하여야 한다.</u></p>	<p>제4조(설비요건) ----- ----- <u>갖춰야</u> -----.</p> <p>1. ----- <u>구비</u> <u>해야</u> -----.</p>

현행	개정안
<p>2.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2.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3.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u>구비하여야</u> 한다.</p>	<p>3. ----- ----- ----- <u>구비해야</u> ----- --.</p>
<p>제5조(조성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u>노력하여야</u> 한다.</p>	<p>제5조(조성지원 등) ① ----- ----- ----- ----- ----- <u>노력해야</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u>시정하여야</u>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제12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정해야</u> ----- ----- ----- <u>해야</u> -----.</p>

현행	개정안
제13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u>대출하여야</u> 한다. ② (생략)	제13조(기증자료) ① ----- ----- ----- <u>대출해야</u> -----.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9. 12.>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구립도서관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유창영
- 연락처: (052)290-3282